마이크로디그리 운영지침

시행일: 2026. 05. 08.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마이크로디그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“마이크로디그리”란 사회 및 관련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역량, 직무, 자격 등을 위한 최소 단위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말한다.
② “주관대학”이란 단과대학 및 후마니타스칼리지를 말한다.

제3조(마이크로디그리의 신설 및 운영) ① 마이크로디그리 신설 시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교과목 등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단, AI/SW 마이크로디그리는 AI/SW 교육위원회의의 심의로 신설한다.
② 마이크로디그리는 주관대학 학부(과) 단독 또는 학제 간 융합을 통해 9~12학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.
③ 마이크로디그리는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없다. 단, 원활한 마이크로디그리 이수를 위해 1개 교과목에 한하여 추가로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있다.
④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은 선수과목 이수 요건이 없는 교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. 단, 부득이 한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, 교과목 개설 학부(과) 소속 학생(다전공생 포함)이 아니면 선수과목 이수여부와 무관하게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.
⑤ 마이크로디그리 변경 및 폐지 등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. 단, AI/SW 마이크로디그리는 AI/SW 교육위원회에서 변경, 폐지 등을 심의한다.
⑥ 마이크로디그리 주관대학은 교과목 관리, 이수자 확정, 각종 통계 등 전반적인 학사업무를 담당한다.
⑦ 거교적 사업 추친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의 마이크로디그리를 운영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⑧ 마이크로디그리 신설 후 2년간 진입자가 없을 경우 폐지할 수 있다. 마이크로디그리 폐지 시에는 이수 신청자가 모두 졸업하는 시점까지 교과목을 운영하거나 대체 인정과목을 지정하여 운영한다.

제4조(신청 및 포기) ①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(편입생은 1학기 이상)은 마이크로디그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,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단, 수업연한 초과자는 신청할 수 없다.
② 마이크로디그리는 최대 3개까지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다. 단, 실감미디어융합전공 이수

자의 경우 실감미디어 혁신공유대학에서 운영하는 마이크로디그리를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.

③ 타대학 학생이 혁신융합대학사업을 통해 본교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단에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주관대학 학부(과) 단독으로 신설한 마이크로디그리는 해당 소속 학생(다전공생 포함)이 신청할 수 없다. 또한, 마이크로디그리에 따라 특정 학부(과) 소속 학생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.

⑤ 이수 중인 마이크로디그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별 소정의 기간에 마이크로디그리 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.

⑥ 마이크로디그리 미이수자 중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마이크로디그리를 위해 졸업유예를 할 수 없다.

제5조(이수) ① 마이크로디그리 신청자는 신청한 마이크로디그리의 이수체계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주관대학 학부(과) 단독 개설이 아닌 경우 마이크로디그리 참여학과 중 최소 2개 이상 학과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.

③ 마이크로디그리 신청 전에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④ 마이크로디그리로 인정된 교과목은 전공 및 교양학점으로 중복 인정한다.

⑤ 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이 다수의 마이크로디그리에 편성될 경우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⑥ 이수 중인 마이크로디그리를 포기할 경우 기 이수한 교과목은 전공 및 교양,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⑦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후 [별지서식 1] 마이크로디그리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.

제6조(성적증명서 기재) 졸업요건 충족 시 이수한 마이크로디그리를 성적증명서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.

제7조(기타)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, 적용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지침은 202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지침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지침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3조(마이크로디그리의 신설 및 운영) 제3항은 2023학년도 1학기까지 신설된 마이크로디그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지침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5조(이수) 제2항은 2025학년도까지 신설된 마이크로디그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지침은 202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지침은 2026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